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 지침에 대한 시행 공고

관련근거:

- 대한행패러협규정 제 3호 조종사 자격관리규정
-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평가 지침서
- 평가관 양성 및 운영계획
- 교육 증명서
- 2011년도 2/4분기 이사회 의결사항:
“2인승 자격 시험에 대한 절차와 방안을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 위임한다.”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현재 발급 의뢰중인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 및 평가 지침을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2011년도 3/4분기 이사회 (2011, 11, 15)에서 의결함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됨을 공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 지침

2011-09-15

1. 2인승 조종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일반 사항

가) 발급절차:

평가대상자가 교육증명서 사본(2인승 교육과정 부분 포함)과 심사비 납부하며 신청서 제출 →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 소집 → 서류 심사 후 평가 일시, 장소, 평가관 지정 등 평가 계획 수립 → 접수자에게 통보 → 응시자는 해당 일시, 장소에 평가 장비, 승객 대동, 교육증명서 원본을 지참하고 응시 → 실기 평가(합격) → 자격발급 의뢰(교육증명서 사본(평가 부분), 발급 수수료) → 자격증 발급

나) 평가 대상자:

접수일 현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회원 자격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유효한 회원으로서 해당 자격 요건(전문 조종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무사고 경과자)을 구비하고 협회의 공인 지도 강사 지도하에 해당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다) 응시자 실기 평가시 준비 및 지참 사항:

회원증(해당 자격증: 전문 조종사 자격증), 교육증명서(이론 및 실습 교육과 비행 증명 확인서), 비행장비, 응시료, 최소 19세의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자격(자격증 지참) 이상 또는 낙하산류의 특수 파일럿 증명 소지한 동승 비행자(동승자로는 이론 및 실습 교육에 참여한 강사나 소속 스쿨장 배제) 대동.

라) 응시자 장비 준비 사항:

EN 또는 LTF 인증을 받은 기체(스프레더바 포함), 하네스(인증 받은 프로텍터 포함), 2인승 낙하산(비행 총무게를 커버하는, 연결 브라이들 포함), 헬멧, 적합한 카라비너(최대 인장 강도가 비행 총무게의 10배 이상인), 기타 탑승자의 보호를 위한 의류 및 보호장구

마) 응시료:

응시료는 실기 시험의 각 회차 마다 사전에 협회로 제출해야 하며 응시료를 납부한 시점을 접수 시점으로 한다. 응시료의 책정은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서 년 1회 단위로 책정한다.(2011년 20만원)

바) 심사비:

실기 평가관에 지급하는 심사비는 응시자 1명당 각 회차에 납부하는 응시료의 50% 이내로 하며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서 년 1회 단위로 책정한다.(2011년 10만원)

사) 평가관 선정:

교육 및 자격 심의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일 기준으로 평생 회원이며 해당 자격증의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로서 해당 과정의 평가관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처벌 중에

있지 아니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지도 강사중 공정한 심사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도 강사를 지정하고 응시자에게는 비밀로 한다.

아) 평가관의 비밀 준수 수칙 및 처벌:

평가자로 선정된 평가관은 자신이 평가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밀로 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사유로 응시자와 직, 간접 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만약 사전 접촉을 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관을 재선정한다. 사후 발각시는 평가를 무효처리하고 평가관의 자격을 박탈하고 양쪽 모두를 상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한다.

자) 자격증 발급시 구비 서류

실기 평가에 합격한 응시자는 응시자가 2 인승 교육을 받은 스쿨의 직인을 교육증명서 평가란에 확인 도장을 받아 사본을 만들고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다음 자격증 발급 수수료와 함께 협회로 발송하면 협회는 서류 및 발급 수수료 확인 후 즉시 발급한다. 우편 접수시 우편료 3,000 원은 별도로 한다.

2. 실기평가 진행 절차와 원칙

가) ID 확인 후 실기시험 실시

- 교육증명서 상의 교육, 비행 및 실습 기록 확인 후 실기시험 절차 진행
- 파일럿 및 동승자 자격증 확인

나) 이륙장, 착륙장 기상 및 여건 확인, 설명(평가관)

- 이륙장 및 착륙장 등의 기상과 여건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진행한다.
- 평가관은 평가 진행시 기상의 변화에 유의하여 진행하고 위험하거나 평가에 적당한 기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 평가를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응시자에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무엇을 보는지 설명한다.
- 비행자는 비행 시 부드럽고 센스 있게 할 것을 주문 한다.
- 착륙장 여건을 고려한 U 턴 착륙 접근법 시행을 위한 대기 장소, 회전방향의 지정, S 턴 허용여부 등을 포함한 착륙 진입절차를 설명한다.

다) 평가 원칙

- 평가 방법 및 중점적인 평가 사항 설명 후 진행한다.
- 합격 불합격만 판단, 약간 부족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재시도 처리한다.
- 재시도에서도 모든 과정을 이상 없이 수행해야 합격처리 한다.
- 고도가 충분할 경우 공중 기동법은 그 시도 비행에서 1 회에 한하여 재시도가 가능하나 그 외의 항목은 재 비행을 통한 재시도를 해야 한다.

- 감독관은 이륙장, 착륙장에서 각 한 번씩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이륙장 평가는 평가 현장에서 제 3 자가 촬영하여 이륙 전 후의 전 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때, 착륙장에 있는 평가관의 평가 시작을 알리는 무전 방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필요시 평가관이 직접 동승하며 평가 할 수도 있다.
- 기상에 따른 요건의 악화로 중지될 경우 재 기회를 부여한다.
- 불합격시 교육 증명서 평가란에 기록 및 서명하고, 1 개월간 추가 실습 비행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 탈락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한다.
- 사적인 이유로 인한 사전 연기를 요청한 경우 연기가능, 사전(최소한 평가 1 일전) 연락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응시 장비 확인, 부적격 장비 준비 시 비행 없이 곧바로 불합격 처리한다.
- 매 회차 마다 평가관은 다를 수 있으며 필요시 2 명의 평가관이 동시에 이륙장, 착륙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3. 세부 실기 평가 내용과 처리

가) 이륙 전 비행 계획 및 기상체크, 보호장구 착용 등에 대한 질문과 확인

- 기상과 바람에 대한 질문
-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인식
- 비상 착륙장에 대한 계획
- 비행계획은 합격 여부가 아니고 계획에 대한 조언과 준비, 기억, 심리적으로 합격 여부로 인한 비행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탑승자의 장비와 보호구를 직접 착용시켜 주고 확인하는지 여부 확인, **직접 착용 시켜주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탑승자에게 필요한 전체 비행 계획, 안전교육, 이, 착륙 과정상의 협조 및 교육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지(협회 표준 안내문 근거).

나) 이륙 판정법

- 5 점 확인법 시행 여부: 반드시 구두(국문이나 영어)로 외치며 확인(Pilots, Lines, Canopy, Airspace, Wind)
- 출발 3 단계 국면에서의 자세(산개 후 글라이더 확인(1 초 이상) 중요, 견제 브레이크 풀어주며 가속, 이탈직후 질주자세 유지 5M 까지)

- 확인시간이 짧고 형식적일 경우 재시도

- 캐노피 확인 안 할 경우 불합격

- 이륙 시 앞으로 쏟아진 후 접힐 경우 재이륙

- 파일럿의 조작 없이 글라이더가 스스로 회복될 경우 계속 진행

- 가속 시 정면, 지면 확인 등이 안 될 경우 재 시도

- 동승자가 중심을 잃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중단하면 재 시도

- 3회 이상 이륙 실패시 불합격

- 하네스에 올라타서 지면에 닿을 경우 불합격

- 동승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륙을 강행하면 불합격

- 이륙 후 피칭을 많이 하여 위험할 경우 불합격

- 이륙 후 지면이나 나무에 닿을 경우 불합격

- 부양직후 경사면에 엉덩이 착지하면 불합격

- 이륙 시 산줄이나 캐노피 및 장비 등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륙을 강행할 경우 불합격

- 지면에서 50M 높이 이전에서 하네스에 앉으려고 브레이크를 놓을 경우 불합격

- 하네스에 앉기 위해 두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당기며 앉을 때 불합격

다) 공중 기동 판정법

- 8 자 비행시 시작점과 전환 및 종료시점을 정확히 유지하는지, 각지지 않고 부드러운 원으로 회전하는지, 좌우의 원이 균형 있게 만들어 졌는지, 흔들림 없이 수행(피칭, 롤링)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각 사항에서 심하게 부족 하다고 판단될 시 재시도

- 해당 시간 준수여부(시간초과 3초 이내 재시도 그 이상이면 불합격)

- 한 바퀴 회전 후 피칭업 시 안정되게 반대방향으로 회전, 진행방향 유지하는지

- 회전 중 접힘 발생시 재시도 접힌 양이 클 경우 불합격

- 스핀성향이 나타날 정도로 회전 시 불합격

라) 착륙 판정법

- 해당 구역(반경 10m) 안에 안전하게 착륙 완료하여야 합격함.

- 착륙대기 지점에서 고도처리

- U 턴, S 자, 8 자 접근법으로 접근하여 착륙

- 최종 접근 시 고도 처리를 위해 최대 1 회의 S 자까지만 허용, 그 이상은 재시도

- 브레이크를 실속 직전까지 사용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불합격

- 착륙 시 다시 뜨며 착륙자세를 취할 경우 재시도

- 최종 접근 구간에서 썬열 영향을 크게 받아 착륙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때는 재시도 가능
- 배풍 착륙 시 확실한 배풍일 경우 불합격,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재시도
- 착륙장 오차범위(10%) 내에 착륙할 경우 재시도, 그 이상일 때는 불합격.
- 최종 착륙 접근시 최소 5M 높이에서 시트에서 일어나 착륙자세를 취하지 않아 위험하면 불합격, 잘하면 재시도
- 두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기타 신체부위로 지면에 접촉하며 착륙 시 불합격
- 착륙장 주변의 나무나 구조물등과 접촉 시 불합격

마) 위험한 상황 발생이나 기타사항에 대한 처리

- 낙하산 산개 불합격
- 떨어질 때 위험하면 불합격
- 기동이 심할 때는 불합격
- 손상이나 피해를 줄 경우 불합격
- 같은 사항을 재시도로 두 번 실패하였을 경우 불합격

이외의 사항은 평가관의 재량으로 위험하지 않을 경우는 재시도, 위험 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교육증명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요령

예시)

2인승조종사 자격 실기 평가표		시험 시행일자			판정	서명
평가 항목	1회차 8/3	2회차 9/3	3회차 10/3			
비행 계획	양호	양호	양호	적합	이순이	
이륙 점검	양호	양호	양호	적합	이순이	
탑승자 보호	확인 미비	양호	양호	적합	이순이	
35초 간의 8자 회전	40	38 / 3b	3b / 35	적합	박완벽	
U턴 접근	양호	양호	양호	적합	박완벽	
반경10m 원내에 안전 착륙	15m	10m / 위험	12m / 10m	적합	박완벽	

홍길동/불합격 김철수/불합격 이순이/박완벽
한국항공협회의 2인승조종사 자격을 위한 실기 평가 시험에 합격함.

실기 시험을 위한 지참 사항: 회원증, 교육증명서(이론 및 실습 교육과 비행 증명 확인서), 해당 자격증, 비행장비(2인용 낙하산 포함), 응시료, 최소 19세의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자격 이상 또는 낙하산류의 특수 파일럿 증명 소지한 동승 비행자 대동

날짜: 2011. 10. 3 평가관 성명: 이순이, 박완벽 평가관 서명: 이순이, 박완벽

장소: 경북, 문경 비행학교명: 한국항공스쿨 비행학교 직인: **한국항공스쿨**

2인승조종사

한국항공협회 교육증명서 - 30 -

표기 내용에 대한 설명

1회차에서 홍길동 강사가 8월 3일에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시간초과, 탑승자 장비 및 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미비, 착륙장 반경 초과 등으로 불합격에 해당 →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내용, 평가관 성명, 판정결과를 증명서에 평가관이 직접 기록하고 협회에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보.

2회차는 1개월 뒤인 9/3일에 김철수 강사의 평가 하에 시행한 결과 1차 시기에는 시간초과로 재시도(3초이내)에 해당하여 2차 시기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시간을 초과하여 두 번의 실패를 하였으며, 착륙시 위험하여 불합격 처리를 함.

3회차는 2회차로 부터 다시 1개월 뒤에 실기시험을 다시 시행, 이륙장 착륙장에서 각 각 이순이, 박완벽 강사가 평가하였으나 1차 시기에 시간 초과로 재시도를 진행하여 마침내 합격함. 따라서 판정관의 각 세부항목을 평가한 평가관이 각 항목별로 적합여부를 표기하고 서명함.

평가 시행 회차 기록란이 모자랄 경우 판정란에 4회차 기록 가능. 이후는 우측 페이지 공란에 별도로 동일하게 칸을 만들고 계속해서 기입함.

또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 강사(여기서는 3회차)가 아래쪽에 평가 일자, 평가자 성명, 서명을 기입한다. 그런 다음 이를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협회로 결과를 통보한다.